

제251회 영등포구의회 임시회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학교운동부 지원에 관한 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김지연 의원 대표발의】



2024. 4. 26.

행정위원회
전문위원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학교운동부 지원에 관한 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1. 경 과

의안 제316호로 2024년 4월 9일 김지연 의원 외 3명으로부터 발의되어 2024년 4월 22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됨.

2. 제안이유

영등포구 학교운동부 지원을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여 실력 있고 재능이 충만한 우수 체육인재를 발굴 및 육성함과 동시에 우리구 인구 유입 활성화를 모색하고자 함. 아울러 학업과 운동을 병행하는 학생선수의 전인교육을 강화하여 명문 운동부의 명맥과 전통을 계속해서 이어 나가 영등포구민의 자긍심을 고양하고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조례의 목적과 정의를 규정함 (안 제1조 ~ 제2조)

나. 구청장의 책무를 규정함 (안 제3조)

다. 예산지원 사업 범위 및 중복 지원 제한을 규정함
(안 제5조 ~ 제6조)

라. 학생선수 진로 및 인권보호를 위한 학생 및 학부모 대상 교육

실시를 규정함 (안 제7조)

마. 관련 기관, 단체 및 기업 등과의 후원·협력 체계 구축을 규정함
(안 제8조)

바. 시행규칙에 관하여 규정함 (안 제9조)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지방자치법」 제13조제2항제2호라목 및 제13조제2항제5호라목, 「학교체육 진흥법」 제3조, 제7조제1항, 제11조제7항, 제15조

나. 예산조치: 필요시 반영

다. 입법예고(2024. 4. 9. ~ 4. 14.): 의견 없음

5. 검토의견

○ 본 제정조례안은

우리 구(區) 학교운동부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내실있는 학교운동부 운영을 도모하고, 학생선수들의 복지향상을 위해 발의된 안건으로, 총 9개의 조문과 부칙으로 구성됨.

○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 안 제2조(정의)에서 “학교”를 「초·중등학교법」 제2조1)에 따른 학교로 정의하고, “학생선수”란 「국민체육진흥법」 제33조와 제34조2)에 따른 체육단체에 등록되어 선수로 활동하는 학

1) 제2조(학교의 종류) 초·중등교육을 실시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학교를 둔다.
1. 초등학교 2. 중학교·고등공민학교 3. 고등학교·고등기술학교 4. 특수학교 5. 각종학교

2) 제33조(대한체육회) ① 체육 진흥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업과 활동을 하게 하기 위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대한체육회를 설립한다.

제34조(대한장애인체육회) ① 장애인 체육 진흥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업과 활동을 하게 하기 위하여 문화체육

생으로 규정함.

- 안 제5조(지원) 및 제6조(지원 방법)에서 학교운동부 또는 학생선수에게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음을 규정하였으며, 중복 지원 금지에 대하여 명시하였음.
- 안 제8조(후원·협력 체계 구축)에서는 학교운동부 지원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관련 기관, 단체 및 기업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도록 함.

○ 검토 결과

- 본 제정조례안은 「국민체육진흥법」 제3조³⁾에 따라 지방자치단체는 국민의 자발적인 체육활동 육성에 대한 책무를 수행하고,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체육진흥에 관한 조례」 제5조의 2⁴⁾에 근거하여 학교운동부에 지원하는 것과는 별도로 세부적인 사항을 마련함으로써 학생선수에게 보다 폭넓은 지원을 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공고히 하기 위하여 발의된 것으로 보임.

관광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대한장애인체육회를 설립한다.

- 3) 제3조(체육 진흥 시책과 권장)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민체육 진흥에 관한 시책을 마련하고 국민의 자발적인 체육 활동을 권장·보호 및 육성하여야 한다.
- 4) 제5조의2(보조금의 지원 및 범위) ① 구청장은 구민의 자발적인 체육동호인조직, 체육단체, 체육행사 등을 지원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③ 제2항 각 호의 구체적인 사업대상, 범위, 방법 및 지원내역은 별표 1과 같다.

<별표1>

구분	대상 및 범위	방법
생활체육교실 등	1. 생략 2. <u>학교체육(학교운동부 포함)</u> , 직장체육(직장운동경기부 포함) 등 3.~ 4. (생략)	설치 및 운영

- '23년 9월 기준 관내 학교운동부 현황은 다음과 같으며 영등포구에서는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체육진흥에 관한 조례」 제5조의2를 근거로 꿈나무 육성지원 사업⁵⁾을 실시하여 전국소년체전 수상 실적에 따라 보조금을 지급하고 있음. 또한, 서울특별시아구소프트볼협회에 등록된 학교야구부⁶⁾에 시비로 훈련용품을 지원하고 있음.

학교명	종목
당서초, 영문초, 영원초	육상
대방초	농구
영신초, 대동초, 문래중, 여의도고, 장훈고	축구
선유중	사격
양화중	양궁
영남중	야구
영남중, 대동초	체조
관악고	태권도

- 한편, 학교운동부를 지원하기 위하여 11곳⁷⁾의 시·도 교육청에서 관련 조례를 제정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지방자치단체에서 학생운동부 지원에 관한 사항을 조례로 제정한 곳은 1곳⁸⁾임.

5) <2023년 꿈나무 육성지원 사업개요>

- 사업명: 2023 꿈나무 육성지원 사업
- 지원대상: 관내 학교 운동부(또는 운동선수) 육성 중인 학교 중 전국소년체육대회 및 전국체육대회 및 전국대회 수상실적이 있는 학교
- 사업예산: 10,000천원 (수상 실적에 따라 예산 내 차등 배분하여 보조금 지급)

6) <학교야구부 지원내역>

구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대상	영남중, 도신초	영남중	영남중	영남중

7) 서울특별시교육청, 경기도교육청,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충청남도교육청, 대전광역시교육청,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충청북도교육청, 경상남도교육청, 부산광역시교육청, 인천광역시교육청

8) 서울특별시 종로구

또한 「지방자치법」 제13조9)에 따라 체육의 진흥에 관한 사항은 자치사무로 보고 있고, 「학교체육 진흥법」 제11조제7항10)에 근거하여 지방자치단체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학교운동부 운영과 관련된 경비를 지원할 수 있기에 상위법률과의 저촉 사항은 없는 것으로 보임.

- 결과적으로 학교운동부는 엘리트 운동선수로 성장할 수 있는 발판을 제공하는 것으로 영등포구의 명예와 인지도를 제고할 것으로 보이며, 지·덕·체 골고루 갖춘 학생선수를 양성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여겨짐. 따라서 지방자치단체에서 별도의 조례를 제정하여 학교운동부에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근거를 만드는 것은 필요한 입법 조치라고 판단됨.

9) 제13조(지방자치단체의 사무 범위) ① 지방자치단체는 관할 구역의 자치사무와 법령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 속하는 사무를 처리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를 예시하면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법률에 이와 다른 규정이 있으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주민의 복지증진 5. 교육·체육·문화·예술의 진흥

10) 제11조(학교운동부 운영 등) ⑦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예산의 범위에서 학교운동부 운영과 관련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참 고 자 료

1 초·중등학교법

제2조(학교의 종류) 초·중등교육을 실시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학교를 둔다.

1. 초등학교
2. 중학교·고등공민학교
3. 고등학교·고등기술학교
4. 특수학교
5. 각종학교

2 학교체육진흥법

제3조(학교체육 진흥 시책과 권장)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교육감을 포함한다)는 학교체육 진흥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고 학생의 자발적인 체육활동을 권장·보호 및 육성하여야 한다.

제7조(학교 체육시설 설치 등)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학생의 체육활동에 필요한 운동장, 체육관 등 기반시설을 확충하여야 한다.

제11조(학교운동부 운영 등) ⑦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예산의 범위에서 학교운동부 운영과 관련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15조(경비의 지원 및 보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학교체육 진흥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3 지방자치법

제13조(지방자치단체의 사무 범위) ① 지방자치단체는 관할 구역의 자치사무와 법령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 속하는 사무를 처리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를 예시하면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법률에 이와 다른 규정이 있으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주민의 복지증진

라. 노인·아동·장애인·청소년 및 여성의 보호와 복지증진

5. 교육·체육·문화·예술의 진흥

다. 지방문화·예술의 진흥

4 국민체육진흥법

제3조(체육 진흥 시책과 권장)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민체육 진흥에 관한 시책을 마련하고 국민의 자발적인 체육 활동을 권장·보호 및 육성하여야 한다.

제33조(대한체육회) ①체육 진흥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업과 활동을 하게 하기 위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대한체육회를 설립한다.

제34조(대한장애인체육회) ①장애인 체육 진흥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업과 활동을 하게 하기 위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대한장애인체육회를 설립한다.

5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체육진흥에 관한 조례

제5조의2(보조금의 지원 및 범위) ① 구청장은 구민의 자발적인 체육동호인 조직, 체육단체, 체육행사 등을 지원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보조금 지급대상 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5. (생략) 6. 학교체육 및 직장체육(직장운동경기부 포함)의 육성·지원

③ 제2항 각 호의 구체적인 사업대상, 범위, 방법 및 지원내역은 별표 1과 같다.

<별표1>

구분	대상 및 범위	방법
생활체육 교실 등	1. 생략 2. <u>학교체육(학교운동부 포함),</u> 직장체육(직장운동경기부 포함) 등 3.~ 4. (생략)	설치 및 운영